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316

발의연월일: 2021. 1. 12.

발 의 자:성일종・이명수・이종배

정운천 · 추경호 · 안병길

홍문표 · 송언석 · 박덕흠

최승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특례 조항에 정원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원조성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판 단됨.

이에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여,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산악정원이 산림공익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 정원문화 다양화 및 산림공익시설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2조제1항제3호 등). 법률 제 호
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3호 중 "그 밖에"를 "국가정원, 지방정원, 그 밖에"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"자연휴양림 등"을 "자연휴양림·국가정원·지방 정원 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)	제12조(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)
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	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	
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	
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	
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	
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.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수목원, 산림생태원, 자연휴	3
양림, 수목장림(樹木葬林), 그	
<u>밖에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<u>국가정원, 지방정원, 그 밖에</u> -
산림공익시설의 설치	
4. ~ 16. (생 략)	4. ~ 16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산지전용신고) ① 다음 각	제15조(산지전용신고) 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	
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	
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	
유림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	
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	
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	
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. 이하	

같다)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, 국유림이 아닌 산림 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.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.

- 1. 산림경영·산촌개발·임업시 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 원·산림생태원·<u>자연휴양림</u>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 치
- 2. · 3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
1	
<u>자연휴양림</u>	
·국가정원·지방정원 등	
2. • 3. (현행과 같음)	
② ~ ⑤ (현행과 같음)	